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2)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의료과실 인정 여부

한두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고의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명의 수의사를 고소하였다. 또한 순돌이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이 있을까?

이보호씨가 김명의 수의사를 순돌이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방임하였다며 고소한 것은 김명의 수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묻은 것이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순돌이의 사망에 대한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은 것이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과 관련한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각각 별개로 판단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알아보자.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 이보호씨가 반려견 순돌이를 데리고 내원하였다. 토이 품종으로 1년령인 순돌이는 경부에 통증을 나타냈다.

방사선 촬영에서 1번 경추와 2번 경추 사이가 다소 멀어진 것을 발견한 김명의 수의사는 환축추아탈구를 의심하고 이보호씨에게 MRI 촬영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보호씨는 MRI 촬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우려하여 응하지 않았다.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에게 통증 감소를 위한 약물처치만을 하였으나 약물 요법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순돌이는 신경증상이 심화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호흡곤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이보호씨는 김명의 수의사가 환축추아탈구를 인지하고도

김명의 수의사의 형사상 책임 여부

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환축에 대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형법상 [과실치사], [과실치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손괴]만이 적용된다. [손괴]는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손괴하겠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환축에 대한 의료과실 사고는 형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호씨는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에 대한 병명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명의 수의사의 고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순돌이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러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



를 갖고 방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수의사가 환축의 질병에 대하여 확진까지 이르지 않고 추가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물의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확진에 이르지 않은 것 자체가 곧 수의사가 환축의 질병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특정 질병 및 그 예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동물의 질병 및 예후를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축의 사망 또는 장해의 야기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의 환축추아탈구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 MRI 촬영을 제안하였지만 이보호씨가 거부하였으므로, 순돌이의 사망에 대한 김명의 수의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김명의 수의사의 민사상 책임 여부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의 사망에 대한 고의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순돌이의 사망에 대한 과실만 인정되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축의 소유주가 필요한 검사를 거부하여 환축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까지의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과실의 개념은 질병의 치료 등 특정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수의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김명의 수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축추아탈구의 진단에 필요한 MRI 검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의 환축추아탈구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진단에 필요한 MRI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환축추아탈구를 확실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순돌이에 대해 외과적 처치를 하지 않은 것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급심 판례 역시 보호자가 수의사가 제시한 검사를 동의하지 않아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발생한 환축의 사망 사안에서 수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진료를 한 동물이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모두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즉 환축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최근, 수의사가 제시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당 수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는 이런 점을 명확히 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